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09
----------	-----

2024. 9. 12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3. / 이수련 의원 등 11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1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및 육교, 지하차도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인명·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건축물 해체 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하게 건축물이 해체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공정을 확인하고 학생 통학로, 어린이보호구역,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육교·지하차도,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 및 정비구역(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) 외각경계 도로에 접한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 (안 제9조)
- 건축물의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 실시 (안 제9조의3)
- 학생 통학로, 어린이보호구역, 어린이 이용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서 건축물 해체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(안 제9조의4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, 건축물 해체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보행 약자의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육교·지하차도와 보행 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 인근 및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외각 경계 도로에 접한 경우,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고,

안 제9조의2와 3에는 건축물 해체공정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해체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·점검하고 학생 통학로, 어린이보호구역,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지역 건축물 해체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 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해체계획 작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물 해체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